

1. 신청

(Q1-1)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 모두 지원대상인지?

▷ (A) 모두 지원 대상

(Q1-2) 공용부 지원 신청을 위해 피해임차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대표자의 결정문만 제출하는 것인지?

▷ (A) 동의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모두 제출

(Q1-3)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하는 서류는?

▷ (A)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

(Q1-4) 공용부분 지원사업 신청은 피해임차인 대표가 해야되는 것인지?

▷ (A) 피해임차인 대표가 신청

※ (공용부분 지원 필수 제출) 서식 제1-1호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Q1-5)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A) 현재 사업대상 주택 소재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현장접수로 진행 중

※ (일정) 신청서 접수(8.26.~9.30.)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10월 초) / 대상자선정(10월 초) / 공사진행(10월 초~12월 초) / 공사점검(~12월) / 보조금 교부(~12월)

2. 지원대상

① 임대인이 소재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Q2-1)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증빙자료

▷ (A) 이 사업에서는 소재불명은 임대인이 거주지를 떠나 주소나 사무소 확인 또는 발송이 불가능한 상태를, 연락두절은 일정기간 통신이 단절된 상태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 상태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대상으로 인정함.

각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소재불명) 우편기록 (주택 수선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1회) 기록)

※ 수취 거절로 인한 반송은 지원 제외

- (연락두절) 통신기록 (통화, 문자, SNS 등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 증빙대체 가능한 예시의 경우 p.10~15 참고

※ 단, 연락두절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연락두절 증빙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Q2-2) 공용부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증빙 방법

▷ (A) 공용부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지원 신청은 피해임차인 대표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제출한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증빙자료로써 다른 피해자의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같음함.

다만, 한 건물내 전세사기로 소재불명·연락두절된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임대인에 대한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필요

(Q2-3) 임대인 소재가 파악되거나 연락이 되는 경우는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 (A) 지원 불가

피해주택의 유지·보수·관리의 주체는 임대인(소유자)이므로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2-4) 임대인이 구속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지?

▷ (A) 임대인이 구속·유치된 경우도 신청 가능.

(소재불명, 연락두절 증빙 대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한 구속·유치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 등

※ 임대인의 체포, 구속, 유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경찰, 검찰, 교도소, 법무부 등)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는 모두 인정

(Q2-5)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소재불명 연락두절 증빙 방법은?

1.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미확정으로 등기상 임대인으로 표기된 경우

▷ (A)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경우 소재불명·연락두절로 인정

2.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며,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 (A)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경우 소재불명·연락두절로 인정

3. 임대인이 사망 후 상속되어 등기상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상속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 (A) 소재불명 증빙(내용증명) + 연락두절 증빙 미첨부 사유서 제출 후 위원회 판단

[임대인 사망시 확인 서류 발급 방법]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② 내용증명 반송서류와 임대인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 ③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 ④ 사망사실 확인

(Q2-6) 전세피해주택의 소유자 변경, 임대인의 전화번호 변경, 경·공매 등으로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경우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 (A) 소재불명 증빙(내용증명) + 연락두절 증빙 미첨부 사유서 제출 후 위원회 판단

(Q2-7)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센터에서 소재확인 또는 연락이 닿은 경우

1. 내용증명이 도착 임대인에게 도착한 경우(수취거절 포함)

▷ (A) 지원불가

2.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으나, 연락이 닿은 경우

▷ (A) 위원회 판단

②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Q2-8)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주택의 판단 기준은?

▷ (A) 주택의 성능향상, 단순 환경개선 등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방·안전·보안·전기·방수 등 피해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안전 및
최소한의 주거여건 유지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지원

사업대상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1차) 제출서류(서식 제4호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확인(시·군)

(2차) 현장점검(시·군, 센터)

(3차) 사업대상 선정위원회 심사(전세피해지원센터)

(Q2-9)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 (A) (역할)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 필요성 확인 및 예상견적 적정성 검토 등 수행
(일정) 센터-시·군 협의를 통해 신청 건들에 대한 현장점검 일정을 정하고,
9월 1주부터 점검 시작

※ 일정협의 : 민원인 신청서 제출(시·군→ 센터) 전달 후

센터에서 확정 일정 알림(→ 피해자)

③ 기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경우 등

(Q2-10)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지원 가능한지?

▷ (A)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주택의 수선·관리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움

(Q2-11) 위반건축물 지원 여부?

▷ (A) 원칙은 지원 불가, 그러나 구분소유권별 세부 위반사항 판단하여 지원 가능

※ 원칙적으로 위반·불법·가 건축물 지원 불가하나 공고문 내 명시한 전유부·공용부분별 미위반 전유부 세대 또는 공용부 지원 가능

(Q2-12)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부 심사 기간 등으로 아직까지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 (A) 이 사업 신청 시 ‘(국토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사업대상 선정위원회 심사 전까지 피해자등으로 결정될 경우 지원가능

※ 공용부분 지원 시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1/3) 산정 시에도 위 기준 적용

(Q2-13) 공고된 기간 외 접수가 가능한지?

▷ (A) 2026년 사업 공고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고,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시 센터에서 연락할 예정. (서식 <제3-1호> 필수)

※ 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급 금액 확정은 모두 위원회 대상자 선정 필요하므로, 신청 후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공사 자제. 또한,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

(Q2-14) 대상자 선정 이전에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 ▷ (A)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확정 모두 위원회 대상자 선정 필요함.
따라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대상자 선정 전 공사 자제
- ※ 단,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서식<제 3-1호>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전 접수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서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후 공사 진행 가능

3. 공용부 지원

(Q3-1) 공용부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 전체 세대 1/3이상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 ▷ (A)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원임. (일반정상세대는 지원대상이 아님)
- 그러나, 한 건물 내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세대와 일반정상세대
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비율(1/3) 이상 전세사기피해세대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임.
- 보조금 지급도 전세사기피해세대 해당분만 지급함
- ※ 보조금 지급률 = 전세사기피해자등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Q3-2) 사업 신청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로 결정된 경우 해당 비율만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 (A) 지원 가능
- 보조금 정산시 센터에서 결정현황 확인하여 변경된 보조금으로 정산 진행

(Q3-3) 공용부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방법

▷ (A) 집합건물의 공용부 유지·보수 또는 관리를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함.

다만, 전세사기피해세대는 임대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세대부분은 피해임차인의 동의로 갈음하고,

나머지 일반 정상세대 소유자의 동의와 합계로 전체 구분소유자 2/3이상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동의를 = (일반세대 구분소유자 동의 수 + 전세피해세대 임차인 동의 수) / 전체 세대 수

✓ 시군 담당자용 사업안내문 6p (공용부 유지·보수 지원 및 안전관리 지원 동의 예시) 참고

(Q3-4) 공용부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 공가세대 수 산정방법은?

▷ (A) 전세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몫 산정.

지원금액 = 월 대행비용 x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공가세대 비율

(Q3-5) 공용부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 공용전기요금도 지원대상인지?

▷ (A) 지원 불가

4. 착공, 준공

(Q4-1) 착공계, 준공계 제출도 시·군에 하면되는 것인지?

▷ (A) 착공계, 준공계 모두 시·군에서 접수

- (착공계) 착공서류(스캔본) 및 관리카드(엑셀파일)는 주 단위로 센터로 공문 발송
(원본 서류는 준공 서류 송부시 한번에 센터로 등기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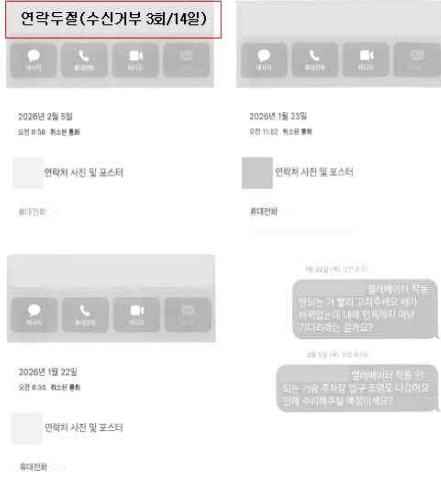
- (준공계) 준공서류 원본(착공서류 원본 포함) 및 관리카드(엑셀파일_준공점검 일정 기재) 센터로 공문 발송

이후 센터 + 시·군이 함께 준공점검

참고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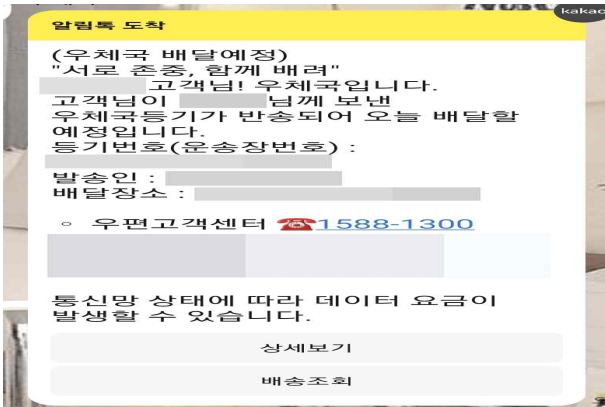
①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2가지 모두 증빙)



□ 연락두절 증빙(통신 요건)

- 14일 이상 기간 동안 최소 3회 무응답
- 수신자 정보(이름, 전화번호)와 임대인 일치해야함
- 발신 날짜와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통화 기록 또는 문자·SNS 메시지 화면 캡처

※ 단순 1~2일 사이에 연달아 건 전화는 인정 불가 (14일 기간 확보 필수)



□ 소재불명 증빙(우편 요건)

-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내용증명 반송 1회
- 배송조회 내역 제출
 - 수취인(임대인) 정보와 우체국 배송 추적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제출
 - 알림톡(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터넷 우체국 배송조회 화면, 우체국 영수증 등
- 반송인정 사유: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 단, 임대인이 고의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인정 불가

20. 2. 9. 오후 1:51

국가정보위원회(국가정보) 배송조회, 배송조회

본 서비스인 인터넷 배송조회는 우편물의 배송상태를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모든 배송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편물 수령규칙 제25조 제4항 제4호 다목, 제59조에 따른 **별달출발서비스**를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위원회(국가정보) 6.23.~9.26.편제된 선별통기(통기) 9.29.이후 접수하시는 경우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됩니다.
중적 조회는 우체국에서 접수하신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새로운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고, 우편물을 우체국에 우편하신 고객은 해당 우체국을 관리하는 우체국(우체국 영업시간 내)에 등기번호를 확인하시고 조회 바랍니다.

등기번호	보내는 분/영수증일자	받는 분	수령인/배달일자	취급구분	배달결과
				보관 익일특급	보관 (반송불요, 1개월 보관)

보내는 분, 받는 분은 우편물 상에 기재된 성명(회사명 등)을 말하여 수령인은 해당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분을 말합니다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2026.01.29	16:33	인터넷	접수
2026.01.29	17:32	인터넷우체국	제작중 내용물명
2026.01.30	09:39	인터넷우체국	제작완료 내용물명
2026.01.30	23:17		발송
2026.01.31	00:02		도착
2026.01.31	05:12		발송
2026.01.31	06:05		도착
2026.02.03	06:34		배달준비 (집배원 정보 보기)
2026.02.03	10:58		미배달 * 미배달 사유: 폐문부재 (익일(영업일 기준)배달 예정)
2026.02.04	06:30		배달준비 (집배원 정보 보기)
2026.02.04	11:40		미배달 * 미배달 사유: 폐문부재 (보관중)
2026.02.06	18:00		미배달 * 미배달 사유: 폐문부재

① 소재불명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



제목 : 목적물 수선 의무 이행 및 긴급 수리 요청

1. 수신인 (임대인)

- 성명:
- 주소:
- 연락처:

2. 발신인 (임차인)

- 성명:
- 주소:
- 연락처:

3. 목적물의 표시

- 주소 :

4. 내용

- 임대차 계약의 현황:** 발신인과 수신인은 상기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에 의거 '목시적 갱신' 상태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하자 발생 사실:** 현재 목적물 내 결함으로 인해 급격히 팽창하며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되며, 날카로운 타일 파편으로 인해 임차인의 신체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 623 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타일 파손은 2 차, 3 차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수신인
성명:
주소:
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장기간 중단에 따른 수리 요청의 건 (영유아 거주로 인한 안전 문제 관련)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라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본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2024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구두 및 비공식적으로 수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세대에는 영유아가 거주 중으로, 엘리베이터 미운행으로 인해 유모차 이동, 영유아 안고 계단 이용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보호자 및 영유아 모두에게 신체적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주거 필수 설비로서,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민법 제623조)**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엘리베이터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조치 계획을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할 것
- 합리적인 기간 내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리 및 복구 조치를 이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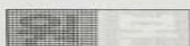
만약 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관계 기관 신고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및 임대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발신인:

발송인 :

수취인 :



② 임대인이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

수용증명서

발급번호: [] 용도: 관공서제출용

성명	[]	생년월일	[]
수용기관	구치소		
구속일자	[]	형 확정일	[]
입소일자	[]		
형기종료일	[]		

수용사항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구치소장]

인터넷 사이트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서 출소증명서는 신청과 동시에, 수용증명서는 수용자 본인외 동의여부를 확인 후 관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번호: [] 보증금반환

원고: []

피고: []

송달장소: [구치소]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수용증명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민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법무부

수신: []
(경유) []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 보증금반환,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용기관	수용번호
[]	[]	구치소	[]

※ 정확한 수용 여부 및 현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등)에 직접 사실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보다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문서는 수용사실 조회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수 없으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

행정주서인: [] 서기관: []

일조자: []

시행: [] 접수: []

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송정동) / http://www.mj.go.kr / 부가공제(2.5)

법무부 사실조회

판결문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민원신청 민원안내 민원상담

민원신청

대상재(수용자) 관리

이용안내

- 대상재(수용자) 및 신청 가능한 민원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재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1363 또는 각 기관별 문의처 참고

대상재(수용자) 목록

대상자	수용기관	신청가능일	대상자상태
[]	교도소	[]	삭제하기

« 1 »

대상재(수용자) 등록하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② 임대인이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

□ 임대인 형사구속(수감) 증빙(만족 시 연락두절·소재불명 증빙 불필요)

- 대상: 임대인이 체포·구속·유치되어 물리적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증빙자료(택1): 현재 수감 상태(소재지, 인적사항)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용증명서) 법무부(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한 현재 수용 사실 증명 서류
 - (법무부 사실조회) 임대인 수감여부 사실조회 회신서
 - (판결문 등) 판결문·변론조서 등에 피고인(임대인)의 주소지가 구치소·교도소 등으로 명시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조회) 법무부 온라인서비스(수용자 접견신청 등)를 통해 임대인 성명 및 수용기관명이 명확히 확인되는 화면 캡처본
- 주의사항: 제출 서류상 수감자가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 및 인적사항과 명확히 일치해야 함

※ 단순 형사고소장 접수증, 수사개시통지서 등 수감 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서류는 인정 불가

③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에 준하여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제 신 호

수 신 :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사 건 번 호
처 명	
결 정 일	
결 정 종류	수사중지(의의자 중지·지명등본)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담당장	장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 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전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자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권등에관한특별법)
 - 관할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청구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0) 등
- 매회소나, 무보償 상담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인용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205), 지역별 상담처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05)
 - 피해자나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담상담 등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80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제도
 -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불명확한, 일관성 없는 일관한 수사관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검사에게 신고 가능

경찰서장

【별첨첨】

【주요내용】

귀하의 사건 피고소인이 소재 확인되지 않아 소재 확인될 때까지 수사 중지(피의자중지·지명등본)하였습니다.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외(2차시) 개정 2022. 12. 29.)

이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약칭: 국내거소신고증명, 약호: C333)

발급번호 (Serial No.)	발급일 (Date of Issuance)	거소말소자 Registration Expired
국내거소신고번호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명(氏名) 성명 변경 사항 포함 [] 네 / [x] 아니요 ※ Previous name(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 Yes / [x] No		
대상자 (Person to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가/지역 (Country/Region)	여권번호 (Passport No.)	거소말소자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국내거소신고일 (D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Expired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o.)		
이전의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o.)		
용도 (Purpose)	발행 제출 (To be submitted to a court)	신청인 (Name of Applicant)
※ 체류자격 변경 사항 포함 [] 네 / [x] 아니요 ※ Previous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 Yes / [x] No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비고 (Remarks)
변경일 (Date of Change)	이 하 빈 칸 (This space has been intentionally left blank.)	비고 (Remarks)
거소 이전사항 (Record of Residential Address Change)	거소주소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전체 (Full Address History)
동거 가족 사항 (Family Members who Live Together)	관계 (Relationship)	성명 (Name)
	이 하 빈 칸 (This space has been intentionally left blank.)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동거 가족 사항은 당사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여당으로 작성되었으며, 친족관계 면부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he above family member details are based on submitted documents, further verification may be required in case of any change.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발급 (Date of Issuance)	직인 (Official Seal)
직인 (Official Seal)	전화번호(Phone No.)
장 Chief of	직인 (Official Seal)

임대인 해외도피(국내거소 말소자)

발급확인번호:

이 증명서는 발소인 개인별 주민등록표
의 원본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2023. 12. 29.
신청인: 말소자 초본
용도 및 목적: 재판, 처분

경기도 동창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공판

주민등록번호 결정내역 없음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세대주및계
면 등 사유 등록 상태

현주소: 통보회거사당말소

이 하 빈 칸

수사결과 통지서(경찰관 소재확인 불가 내용)

임대인 사망(말소자 초본)

③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에 준하여 인정되는 경우

법원 나의 사건내역 조회(공시송달 등)

법원 나의 사건내역 조회(공시송달 등) 2

주소보정명령

판결문 내 공시송달